

이사회 운영규정

2025.5. 14

주식회사 위메이드

목 차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[목적]
- 제 2 조 [적용범위]
- 제 3 조 [권한]

제 2 장 구 성

- 제 4 조 [구성]
- 제 5 조 [의장]

제 3 장 회 의

- 제 6 조 [종류]
- 제 7 조 [소집권자]
- 제 8 조 [소집절차]
- 제 9 조 [결의방법]
- 제 10 조 [부의사항]
- 제 11 조 [이사회 내 위원회]
- 제 12 조 [관계인의 출석]
- 제 13 조 [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]
- 제 14 조 [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]
- 제 15 조 [의사록]
- 제 16 조 [간사]

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09. 06. 29

개정 2013. 05. 20

개정 2013. 07. 24

개정 2014. 05. 09

개정 2022. 03. 31

개정 2024. 08. 06

개정 2025. 05. 14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위메이드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본 규정에서 이사의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 ① 이사의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.

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 34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둘째달(2 월, 5 월, 8 월, 11 월)에 개최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영업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(1) 주주총회의 소집

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
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
(4) 정관의 변경
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2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의 보수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연간,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 (자금계획 및 예산운용)
- (2) 중요한 신규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존 사업부문의 중단
- (3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4) 공동대표의 결정
- (5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6) 중요한 사규(내부회계관리규정, 이사회운영규정, 임원처우규정,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등 회사의 주요 규정)의 제정 및 개폐
- (7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8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100 억원 이상(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100 억원 이상)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그 처분
- (2) 매입대금 100 억원 이상(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100 억원 이상)의 자산의 취득
- (3) 결손의 처분
- (4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5) 신주의 발행
- (6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
- (7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8) 전환사채의 발행
- (9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0) 100 억원 이상(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100 억원 이상)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자금차입 및 보증
- (11) 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100 억원 이상(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100 억원 이상)의 재산에 대한 매각, 담보제공
- (12) 회사의 중요한(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)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각
- (13) 라이선스(해당지역에서의 유통 및 서비스 권리) 부여 및 처분에 관한 사항. 단, 라이선스 부여의 경우 그 규모(판권비)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.
- (14) 100 억원 이상(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100 억원 이상)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비용의 지출
- (15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(단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시에 자기주식부여방식을 택한 경우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)
- (16) 자기주식의 소각
- (17) 이익배당,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1-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 타

-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2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)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률·회계·경영 관련 자문 등에 대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 인력(기관)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③ 외부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은 경우 사외이사는 그 배경과 내용, 비용,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15 조(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 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6 조(간사)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5.20)

이 규정은 2013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7.24)

이 규정은 2013 년 7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5.9)

이 규정은 2014 년 5 월 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3.31)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8.6)

이 규정은 2024 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5.14)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